

의안번호	2218349
의 퇴 인	김영호 의원
회 답 일	2026.05.28.
추계번호	26C1793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이주배경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 (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3	안 제6조 (공교육 진입 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취학 대상 이주배경학생 본인 및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제2항)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보호자가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 정보 제공, 입학 신청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4	안 제7조 (한국어능력진단검사)	(제1항)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 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 등”이라 한다)의 학교 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이하 “한국어능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주배경학생 등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8조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 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교수학습자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한국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학교의 장은 한국어능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위탁기관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6	안 제9조 (입학 전 한국어교육 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 등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이주배경학생 등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안 제10조 (정보의 제공·활용 등)	(제5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활용하여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8	안 제11조 (중점지원학교의 지정·지원 등)	(제1항)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하 “중점지원학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1조 (중점지원학교의 지정·지원 등)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점지원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2조 (연수)	(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0	안 제14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지원 및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안 제5조 (실태조사) 안 제6조 (공교육 진입 지원) 안 제7조 (한국어능력진단검사) 안 제8조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안 제9조 (입학 전 한국어교육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5조)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이주배경학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3억원이 편성됨 - (안 제6조)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있음 - (안 제7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안 제8조 및 제9조) 교육부는 한국어 예비과정 도입 및 지원인력 확대를 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153억원이 교부됨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10조 (정보의 제공·활용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12조) 한국어교육 시스템 선도교원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기준 특별교부금 4억원이 교부됨 - (안 제14조)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앙 및 17개 시·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임
	안 제11조 (중점지원학교의 지정·지원 등)	
	안 제12조 (연수)	
	안 제14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 지원 체계 구축 및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 조사, 한국어교육 지원 및 중점지원학교 운영 등을 규정함

- ‘이주배경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또는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가정의 자녀를 말하며, 최근 5년간 전체 인원이 연평균 6%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표 1] 이주배경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제결혼가정	131,522	135,967	140,806	146,804	149,332
국내출생	122,095	126,029	129,910	134,817	136,592
중도입국	9,427	9,938	10,896	11,987	12,740
외국인가정	28,536	32,678	40,372	47,010	52,876
전체	160,058 (8.6)	168,645 (5.4)	181,178 (7.4)	193,814 (7.0)	202,208 (4.3)

주: 1. 이주배경학생은 부모의 국적 및 출생지(국내·국외)를 기준으로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됨

2.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교육부

- 이에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9.),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2025.2.) 등을 수립하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2¹⁾에 근거한 이주배경학생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2024.4.23.자로 시행되었으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한국어학급 운영 및 경비 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그러나 현재 다수의 사업이 개별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주요 규정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고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3조)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나, 이는 권고적·선언적 성격의 규정에 해당하여 동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재정소요만을 산출하기 어려움
 - (안 제5조) 제정안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타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해당 재정소요에서 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을 분리하여 추계하기 곤란함
 -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이주배경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 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됨
 - 참고로, 해당 규정은 2024. 4. 23.부터 시행되어 2025년에 최초로 동 법령에 근거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실태조사의 주기를 1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2026년 실시 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됨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6조)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학교 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교육감이 입학 절차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존 사업이 운영 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²⁾에 따라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 안내서(15개 언어)를 제작·배포하고 있음
 - 또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2025.2.)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무부 등과 협조하여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공교육 진입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청의 취학 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임
- (안 제7조) 제정안에 따라 한국어능력 진단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검사의 대상자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워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
 - 현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모두의 한국어)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이 시행되어 해당 프로그램의 고도화 또는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그 여부 및 확대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8조 및 제9조) 제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운영, 교원 배치 등을 규정하여 국가 등의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통해 상기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각 시·도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음³⁾
 - 또한,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9.)의 추진과제로 한국어 예비과정 도입 및 지원인력 확대 등을 선정하고 사업 지원 목적의 특별교부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153억원이 시·도교육청에 교부됨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호·교육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표 2] 한국어학급 및 인력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어학급(개)	371	404	461	462	567
한국어학급 학생(명)	5,118	5,917	7,319	7,842	12,174
담당교원(명)	—	—	—	367	443
다문화언어강사(명)	—	—	—	325	400

자료: 교육부

[표 3] 한국어 프로그램 관련 특별교부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특별교부금 규모	11,874	8,530	15,300
한국어학급	9,521	5,530	9,000
한국어 예비과정	2,353	3,000	6,300

자료: 교육부

- (안 제10조) 제정안에 따라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운영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 구성 및 사용자 규모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산출하기 어려움
 - 참고로, 현재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으며, 학적의 경우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음
- (안 제11조) 제정안 시행 시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하 “중점지원학교”)의 지정·지원이 이루어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중점지원학교의 수 및 지원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12조) 제정안에 따라 담당 교원 연수가 실시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통해 상기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교육부는 한국어교육 시스템 선도교원 양성 목적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4억원이 편성됨
- (안 제14조) 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나, 타 법령에 따라 동 명의의 센터가 운영 중이므로 해당 재정소요에서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만을 분리하여 추계하기 곤란함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앙 및 17개 시·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며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보급 및 정책 조사·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음⁴⁾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